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검토경과

가. 의안제출

제출일 : 1999년 5월 29일

제출자 : 거 창 군 수

나. 회부일자 : 1999년 6월 14일

다. 의안번호 : 제 99-25 호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거창군공설 시장관리 및 사용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준수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내 시장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장사용권을 상속 받았을 때의 신고와, 시장사용권 양도 전대시 허가사항을 폐지하고,
- 이와 관련하여 시장사용권을 허가 없이 양도 전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거창군 재산으로 먼 지역에 소재한 공설시장의 관리에 있어서 관리규정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사용

자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그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시장을 사용함으로써 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하고있고, 공설시장 이라는 공재산의 사용수익권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은 심사시 다음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 개정 조례안에서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한 신고의무와 양도 금지 의무를 삭제할 시,
 -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을 허가 받은 사용자가 시장사용을 폐지하거나 상속 또는 양도, 그리고 타인에게 임의로 전대할 경우, 시장의 관리나 질서유지, 그리고 공설시장 사용수익권이라는 재산권의 분쟁 발생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 다중이용 시설인 공설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부과 사항을 폐지할 경우, 이로 인한 사용자의 시장질서 문란이나 사용권에 따른 분쟁이 있을 시 이를 제제하거나 해결할 이유나 근거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 이미 시장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권을 상속하거나 임의로 양도 또는 전대하여 시장을 사용할 경우,
 - 본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양수자 등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고사항이 허가사항으로 바뀌는 결과가 되어 규제완화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 이 경우 본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을 사용한 결과가 되어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시장관리 조례상 허가나 규제사항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시장관리의 모든 사항을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본 조례 제11조에 규정한 시장관리인에게 시장관리의 모든 권한을 위임해 자율관리하는 체제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자료

- 행정규제기본법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검토경과

가. 의안제출

제출일 : 1999년 5월 29일

제출자 : 거 창 군 수

나. 회부일자 : 1999년 6월 14일

다. 의안번호 : 제 99-26 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본 조례의 모법인 주차장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민영주차장의 표시 및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규정 신고사항 등이 폐지되어 본 조례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민영주차장 정의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안 제2조)
- 민영주차장 관리자가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안 제3조)
- 주차장의 표시를 공영주차장에만 한정하여 표시토록 규정(안 제5조)
- 민영주차장을 군수에게 신고 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설치 후 군수에게 통보만 하도록 개정(안 제7조제2항)
-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관한 조항 폐지(안제 17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02호로 본 조례의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본 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 거창군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이외의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등 모든 제한사항을 없애고, 민영주차장의 요금도 자율에 의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 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개정되는 하자 없는 조례안인 것으로 판단됨
- 단, 주차장법 개정과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례인 거창군주차장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도 함께 개정되어야 하므로, 향후 조속히 이 조례도 개정되어야 할 것임.

4. 참고자료

- 주차장법 제12조,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3
- 조례 규칙 규정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일제정비 계획

거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1. 검토경과

가. 의안제출

제출일 : 1999년 5월 29일

제출자 : 거 창 군 수

나. 회부일자 : 1999년 6월 14일

다. 의안번호 : 제 99-27 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폐지이유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이 농어촌정비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농지개량사업(경지정리)주민부담금이 없어짐에 따라 현행조례의 존치가 불필요 하므로 폐지

나. 주요골자

-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농촌근대화 촉진법 폐지되므로,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진 현행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폐지

3. 검토의견

-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거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의 제정근거가 되었던 농촌근대화촉진법이 1995년 12월 29일 농지개량조합법 제정으로 인해 이 법의 부칙규정으로 폐지되어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없어졌고,

- 본 조례의 주된 내용이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주민 부담금에 관한 사항이나,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대체되면서 주민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 관련규정의 의미가 없어 졌으며,
- 그 이외의 본 조례에 규정한 내용도 농어촌정비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존치의미가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이와 함께 농촌근대화촉진법의 폐지로 이와 관련된 거창군농지 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도 관련법 조항에 맞지 않는 내용은 개정되어야 할 것임.

4. 참고자료

- 농어촌정비법(법률 제4823호, 94. 12. 22)
- 농지개량조합법(법률 제5077호, 95. 12. 29)

거창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 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검토경과

가. 의안제출

제출일 : 1999년 5월 29일

제출자 : 거 창 군 수

나. 회부일자 : 1999년 6월 14일

다. 의안번호 : 제 99-28 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농어촌도로도 본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손괴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부담금을 선납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권리남용의 우려가 있어 이를 구체화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농어촌도로도 본 조례에 적용되도록 규정(안 제1조)
- 부담금을 선납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손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원인자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로 명시(안 제5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도로의 복구와 손괴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도로법에 규정한 도로 이외에도 농어촌도로에도 적용하도

록 조례를 개정하고,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및 손해자부담금의 선납 예외규정으로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천재지변에 가까운 원인으로 인하여 손해되거나, 원인자가 사망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로 구체화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권리남용의 우려를 배제하려는 조례개정안으로서 조례개정이 합당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자료

- 행정규제개혁 대상사무 일제정비계획
- 건설교통부소관 규제개혁법개정 정비대상 개정지시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검토경과

가. 의안제출

제출일 : 1999년 5월 29일

제출자 : 거 창 군 수

나. 회부일자 : 1999년 6월 14일

다. 의안번호 : 제 99-29 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본 조례의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일부 조항과 상위법 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을 폐지하여 행정규제로 인한 군민불편을 해소

나. 주요골자

-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삭제
- 상위법 규정에 어긋나는 제14조 삭제
-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제167호 97. 12. 4)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중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하거나, 이 법에 위임되지 않은 조례의 조항들을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토록 하려는 조례개정안으로서, 전반적으로 그 취지와 내용은 타당성이 있으나, 부분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개정으로 삭제되는 제4조 정화조등의 설치, 제5조 정화조등의 준공검사, 제6조 정화조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법 제9조, 법 제12조, 법 제14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 본 개정조례안에 의해 폐지되는 제14조 허가취소에 관한 경우,

- 법 제34조에 의하여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주민생활환경에 위해가 있을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 본 조례 제12조에서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허가취소권을 없애는 것은 지나친 규제완화인 것으로 판단되며, 허가권만 있고 허가 취소권은 없는 입법체계상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 그리고 폐지되는 조례안 제20조 분뇨관련 영업허가에 관한 조항에 관하여는,

-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0조에서 분뇨등 관련영업허가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허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조례에 명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임은 없으나, 법 제35조 제3항에서 군수가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20조에서 규정한 대로 거창지역에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창군내에 주소를 두도록 규정한 본 조항은 현행대로 존치를 시켜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우리 지역의 이익이 되는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항 폐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폐지되는 조항 제21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22조 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제23조 처리실적보고 등에 관한 조항도 상위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본 조항의 폐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번 조례개정으로 바뀌는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97년 12월에 환경부 예규로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이 기준에 따라 본 조례의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개정되는 것으로서, 환경부 기준이 바뀌는 시점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그 시기를 일실한 것임으로 시정이 요구되며, 향후 본 조례안 개정시에는 환경부 예규의 개정과 동시에 그 내용이 본 조례안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조례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자료

- 행정규제사무의 정비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제167호)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검토경과

가. 의안제출

제출일 : 1999년 5월 29일

제출자 : 거 창 군 수

나. 회부일자 : 1999년 6월 14일

다. 의안번호 : 제 99-30 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개별법(하천법, 산림법, 전염병예방법, 경범죄처벌법 등)에 따라 처리가능한 일부조항을 폐지하여 행정규제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 관련 조례명 변경에 따른 관련용어를 수정

나. 주요골자

○ 행위의 허가 및 제한규정 폐지(안 제6조)

○ 허가취소 규정폐지(안 제7조)

○ 권리양도의 제한규정 폐지(안 제8조)

○ 입장거절 및 퇴장규정 폐지(안 제12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발생 유원지 내에서의 각종 행위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행정규제를 없애려고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그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항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자연발생유원지 내에서의 모든 행위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며, 그 제한행위에 대해서는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서 규제 또는 제한이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규제완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폐지되는 조례안의 내용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안내하고 열거해 놓은 성격의 조항들이므로, 본 조례에서는 규제적인 성격의 용어인 허가, 제한 등의 표현은 완화하여 유원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유원지 내에서의 특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안내를 하는 형식으로서의 조례를 개정함이 보다 타당성이 있고 현실적일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자료

- 행정규제 사무의 정비계획
- 거창군 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검토경과

가. 의안제출

제출일 : 1999년 5월 29일

제출자 : 거 창 군 수

나. 회부일자 : 1999년 6월 14일

다. 의안번호 : 제 99-31 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행정규제 사항을 폐지, 완화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고사항으로 완화
- 신고사항으로 완화됨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삭제
- 봉투공급에 관한 조항의 조문수정

3.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신청에 의해서 군수가 지정토록 한 조항을 자율에 의해 신고만 하면 쓰레기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실질적인 자율경쟁에 의한 규제완화 조치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신고로 할 경우, 쓰레기봉투의 판

매량이 많은 시내 중심가에는 판매소가 많이 생겨서 문제가 없을 것이나, 상대적으로 봉투 판매량이 적은 변두리 지역에는 쓰레기 봉투의 판매를 기피하여 판매소가 없을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는 없을 것인지도 심사 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자료

- 행정규제사무의 정비

거창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경과

가. 의안제출

제출일 : 1999년 5월 29일

제출자 : 거 창 군 수

나. 회부일자 : 1999년 6월 14일

다. 의안번호 : 제 99-32 호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 중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승계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취득으로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를 승계한다는 본 조례의 규정은 대법원의 1993. 5. 11선고 92누17211판결로 위법이라는 판례에 따라 승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이를 규정한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조항 중, 제2항의 승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남은 제1항은 급수장치

의 권리의무 귀속에 관한 규정만 남아있어, 이 조항 중 「처분」이라는 표현은 승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조항을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권리에 부수한다」로 바꾸고, 본 조항의 제목도 「권리의무의 승계」로 되어 있는 것을 「급수장치의 권리의무」로 바꾸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참고자료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규제 일제정비 계획